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8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9년 군의 조직개편(국장제 도입)에 따른 정비로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변경

- 기획실장 → 경제건설국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
정한다.

2) 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3조(국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, 경제건설국을 둔다.

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, 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도시과, 시설관리과를 둔다.

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1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20.9.14.~2020.10.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요청 미반영(추후반영 예정)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건설국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.	제17조(위원회의 구성)----------. ----------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
1. 기획실장	1. 경제건설국장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
연락처	(033) 330 - 2540